

[별첨]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정관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정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소 소재지) 사무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 92 세양아르비채 102-404호’에 둔다.

제3조(회원자격)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 법인의 회원은 개인회원(정회원, 준회원, 일반회원, 해외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1. 개인회원

1) 정회원

-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수여 받은 자
- (2) 준회원으로서 3년 이상 자격을 유지한 자
- (3) 1급 전문상담사, 2급 전문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자
- (4) 기타 분과학회에서 정회원으로 추천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2) 준회원

- (1) 대학에서 상담관련 분야(전공)에 5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별표 1에 의한다.
- (2) 대학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수여 받은 자
- (3)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자
- (4)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교 및 상담기관에서 상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 (5)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
- (6) 일반회원으로서 본 학회 및 분과학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120시간이상 받은 자
- (7) 분과학회에서 준회원으로 추천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3) 일반회원

- (1)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관련대학이나 기관에서 120시간 이상의 상담교육을 받은 자
- (2) 학사 이상의 학위와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성직에 종사한 자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 (3) 상담관련분야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 (4) 기타 분과학회에서 일반회원으로 추천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4) 해외회원

- (1) 해외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학문을 전공한자로서 석사이상 재학중인 자
- (2) 기타 분과학회에서 해외회원으로 추천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5) 특별회원

- (1)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2. 기관회원

- 1) 상담관련 학과를 개설한 학부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인정한 대학
- 2) 본 학회의 정회원이 속하는 기관으로서 상임위원회가 인정한 기관

3) 대학도서관 등 공공기관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인정한 기관

3. 평생회원

개인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며 200만 원 이상 발전기금을 출연하는 자는 평생회원이 되며 평생 연회비가 면제된다.

제4조(회원의 권리)

- ① 회원은 이 법인으로부터 전문적 권익을 보호받는다.
- ② 회원은 이 법인으로부터 주관하는 각종 학술대회, 연수의 혜택을 받는다.
- ③ 회원은 이 법인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각종 연구물을 지급받는다.

제5조(회원 유지 요건) 모든 회원은 학회의 설립 목적에 따라 상담학의 발전 및 회원 상담 자질 및 기술의 향상을 위해서 매 년마다 회원 유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회원을 유지할 수 있다.

1. 학회비 납부
2. 학회 학술행사 참석 1회
3. 전문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는 전문가회비 납부
4. 전문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는 윤리교육 참석 1회

제6조(회원 유지 요건 예외)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 2항, 4항을 충족하지 않아도 회원 유지가 된다.

1. 65세 이상의 1급 전문영역 수련감독자로, 16년 이상 자격을 유지한 자
2. 해외 회원

제7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탈퇴할 수 있다. 탈퇴기간 동안의 모든 수련은 인정되지 않는다.

1. 회원의 사망
2. 회원의 제명
3. 본인의 탈퇴 요청으로 인한 회원 탈퇴

제8조(회원의 자격 및 권리 정지)

1. 회원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도의 회원의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되며, 해당 연도의 수련은 인정하지 않는다.
2. 정회원 중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는 당해 연도의 회원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의 수련감독을 인정하지 않는다. 단, 다음 연도의 수련감독 회복에 대해서는 제9조 3항의 기준에 따른다.
3. 기관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관회원이 정지 된다.

제9조(회원의 자격 및 권리 회복)

1. 매년 회원 유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회원의 자격 및 권리가 유지된다.
2. 2017년까지 회원의 자격 및 권리, 수련과정 회복을 위해서는 모든 미납 기간의 회비를 전액 납부하면

- 그때부터 회원 자격 및 권리 회복, 수련과정이 회복된다.
3. 2018년부터 회원의 자격 및 권리, 수련과정 회복을 위해서는 미납기간의 회비를 포함하여 회원 유지 요건을 충족하면 회원의 자격 및 권리 회복, 수련과정이 회복된다.
 4. 회원 가입 이후 오랫동안 수련활동이 없는 회원은 당해연도 포함한 2년의 회비와 회원 유지요건을 충족 하면 회원 자격 및 권리 회복, 수련과정이 회복 된다.
 5. 정회원 중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소지자가 회원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련감독자 역할이 정지된 경우, 매년 상반기 6월 말까지 미충족한 연도의 회원 유지 요건을 충족하면 회원의 회복과 수련감독 활동이 회복된다.
 6. 기관회원은 미납한 연도의 회비를 당해 연도 6월 말까지 완납하면 기관회원이 회복된다.

제10조(회원의 회비 환불 및 기타 환불)

1. 회원의 탈퇴 요청으로 인한 회원 탈퇴 시 당해 년도 회비에 한해서 결재방법에 따른 수수료를 제하고 일할 계산하여 환불을 해주며, 그 이전연도의 회비는 환불이 불가하다.
2. 각종 학술대회 및 교육 연수회의 환불은, 해당 행사시 회원들에게 공지한 환불 안내에 준하여 하도록 한다.
3. 자격검정 수수료 환불은, 해당 자격검정 공고 시 회원들에게 공지한 환불 안내에 준하여 하도록 한다.

제11조(회장의 선출)

- ① 정관 제11조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
- ② 대위원회는 이 법인의 정관 시행세칙 제14조에 준한다.
- ③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회규에 따른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 법인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부회장의 직무) 기획사업담당 부회장은 국가자격·법제화추진위원회, 상담정책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기획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윤리위원회, 홍보위원회, 사회적위기상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학회발전기금 조성을 담당한다. 학술사업담당 부회장은 교육연수위원회, 연차학술대회위원회, 전문가지원·관리위원회, 자격검정위원회, 학술위원회, 통합학술 및 사례연구위원회, 학회지편집위원회, 국제학술지편집위원회, 학생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 유고시 잔여기간동안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15조(총회와 이사회 의사록)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원 또는 이사의 현재 수
3. 출석한 회원 또는 이사의 수

4. 의결사항
5. 의사의 경과, 요령 및 발전자의 발언요지

제16조(대위원회) ① 정관 제28조 ①항의 규정에 의한 이 법인의 대위원회의 구성은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사무국장, 상임위원장, 분과학회장, 지역학회장으로 구성한다.

- ② 대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겸직한다.

제17조(대위원회의 기능) 대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추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분과학회 및 지역학회의 설치 및 폐지
7. 기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18조(상임위원회) ① 정관 제28조 ①항의 규정에 의한 이 법인의 상임위원회의 구성은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사무국장, 상임위원장으로 구성 한다.

- ②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겸직한다.

제19조(상임위원회의 기능) 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추천에 관한 사항
2. 정관 및 정관 시행세칙 변경에 관한 사항
3.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4.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분과학회 및 지역학회의 설치 및 폐지
8. 기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20조(위원장 선임 및 임기) 상임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차학술대회위원장은 1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장의 보선) 상임위원장이 임기 중에 결위된 경우에는 회장이 선임하며, 그 보선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회 운영)

- ① 상임위원회는 회장과 협의하여 운영세칙 또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며 그 결과를 년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각 상임위원회의 업무수행에서 발생되는 재정은 이 법인에 귀속된다.

제23조(위원회) 정관 제28조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상임위원회는 아래 적시된 17개 위원회를 말한다.

1. 기획위원회

-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학회 발전방안 기획, 신규 분과학회 설립, 학회의 교육, 연수, 자격검정, 자격관리 등의 시스템화 등 학회의 기획/혁신 업무

2. 윤리위원회

-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전문가 윤리 관련 제소 처리, 회원 및 전문상담사의 품위 고취 등 회원의 전문가 윤리의식 고취 업무

3. 학술위원회

-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학술상 제정, 학술상 대상자 심사 및 선정, 연차대회 학술 업무(심포지움, 워크숍, 학술논문/포스터 등) 지원, BBLS 운영, 상담관련 전문서적 기획 및 간행 등 회원의 학술수준 제고 업무

4. 학회지편집위원회

-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상담학연구' 원고 수집, 심사, 발간, '상담학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 등 학술지 편집업무

5. 국제학술지편집위원회

-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국제학술지 JAPC 발행, SSCI 및 각종 주요 학술 DB 등재 추진 등 학술연구의 국제화 업무

6. 교육연수위원회

-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자격 취득 연수회 개최, 연수기관 관리, 웹비너 제작 등 회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과 연수 직접 시행 및 관리업무

7. 자격검정 위원회

- 1) 구성: 위원장 2인, 위원 약간 명
- 2) 임무: 상담학회 수련등록자 관리, 자격심사, 시험관리 등 전문상담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제반 업무.

8. 통합학술 및 사례연구위원회

-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통합학술대회 및 사례발표회' 기획 및 주관, 분과학회 및 지역학회의 사례연구회 관리 등 실무관련 학술/사례발표회 주관업무

9. 홍보위원회

-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e-소식지, 홍보자료 발간 등 대내홍보, 상담관련 잡지발간, 언론사 제휴 강의 기획 등 대외 홍보, 홍보 네트워크 관리 등 학회의 대내외 홍보업무

10. 대외협력위원회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2) 임무: 정부, 국회,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 대외 기관과의 상호협력업무, 학회 및 전문상담사의 사회적, 사회적 인식 및 인식 제고, 대외협력 네트워크 DB 제작 및 관리 등 외부기관과의 협력업무

11. 국제교류위원회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2) 임무: 해외 저명학자 초청, 국제학술대회 개최, 국제학회(APA, ACA, ACES 등)와 교류협정 체결 및 시행, 국제학회의 지역 챕터 구성, 국제학술지 지원 업무 등 국제학술교류 등 학회의 국제화 업무

12. 상담정책위원회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2) 임무: 상담관련 국가 또는 공공 정책 연구, 제안, 공공정책 관련 국민, 정부, 정치인, 학회원의 의견수렴 및 정책 반영 등 학회의 공공서비스 제고 업무

13. 국가자격·법제화추진위원회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2) 임무: 상담 관련한 법률 및 상담 현안에 대한 국회 대상 의견 교류, 학회 전문상담사 자격증의 공인화 또는 국가자격증화 추진 업무

14. 전문가지원·관리 위원회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2) 임무: 전문상담사 자격 부여, 유지 및 갱신 지원, 전문상담사 DB 제작 및 관리, 전문상담사 취업지원, 국가 및 공공사업 파견지원 등 전문상담사 지원 및 관리업무

15. 학생위원회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2) 임무: 상담관련 학과(학부, 대학원) 학생들의 학술활동, 홍보활동 및 연대 지원, 차세대 상담자(고등학생) 양성사업 주관, UCC 및 상담이야기 공모전 등 차세대 전문상담사 지원 업무

16. 연차학술대회위원회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2) 임무: 연차학술대회 개최

17. 사회적위기상담위원회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2) 임무: 사회적위기상담지원 및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지원단 교육 업무

제24조(분과학회 및 지역학회)

① 분과학회 및 지역학회(이하 동일)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00상담학회”로 한다.

② 분과학회 및 지역학회의 회칙은 이법인의 정관 범위 내에서 각기 회칙을 제정하고, 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각 분과학회 및 지역학회의 회원자격은 모학회의 회원자격 기준에 준하도록 한다.

④ 분과학회 및 지역학회는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해야하며 정기총회에서는 구두 및 서면으로 1년간의 분과학회 및 지역학회 사업 활동과 회계에 대한 내부감사 결과를 보고 해야 한다.

⑤ 정관 제29조 ③항의 규정에 따라 분과학회 및 지역학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다.

제25조(자격관리) 본회는 회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상담사 자격규정을 두어 운영한다.

1. 본회는 전문상담사 자격규정을 두어 자격증을 발급하며 이를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2. 각 분과학회에서는 본 회의 전문상담사 자격취득을 위해 규정한 검정 교과목 외에 별도의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행세칙에 규정한 연수평점이상을 취득한 자는 각 분과학회의 요청에 따라 세부전공을 적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3. 자격증의 종류는 1급 전문상담사, 2급 전문상담사로 구분한다.

제26조(연구회) 분과학회 및 지역학회의 설립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회원의 필요에 따라 연구회를 결성할 수 있으며 모 학회는 연구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한다.

제27조(출자방법) 본 법인의 출자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출연금품
3. 발전기금
4. 기타 수입금

제28조(경비지출) 본 법인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제29조(특별회계의 사용)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이를 모두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제30조(회원의 회비) ①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1조(고문) 역대 회장은 고문으로 추대하며, 고문은 학회 제반 운영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으며, 고문에 대한 별도의 규정으로 둔다.

제32조(사무국 직원) 정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국을 둔다.

1.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3조(세칙의 개정) 이 법인의 정관 시행세칙 개정은 회장, 상임위원 3인 이상이 발의하고, 상임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확정하며 확정되는 즉시 발효한다.

부 칙

- 본 시행세칙은 2006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07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08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0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5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1항 2호 (1)세항의 내용은 별표1에 의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23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